

제 525 호
1975. 10. 1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편집 : 문화정보실장 조 용 하
전화 76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조 례 | |
| 제 989 호 |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..... 3 |
| 제 990 호 |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..... 5 |
| ○ 규 칙 | |
| 제 1522 호 | 서울특별시 종합선계실 운영규정..... 6 |
| 제 1523 호 |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..... 7 |
| 제 1524 호 |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운영규칙중개정규칙... 14 |
| ○ 훈 령 | |
| 제 433 호 | 서울특별시 새무공무원인사관리규정..... 15 |
| ○ 고 시 | |
| 제 155 호 | 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 변경고시..... 17 |
| 제 158 호 |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결정및지적승인..... 17 |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0023

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제 159 호 |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소 위치 변경고시 | 18 |
| ◎ | 공 고 | |
| 제 232 호 | 환지계획업무 변경공탁공고 | 18 |
| 제 233 호 |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건축계획 공탁공고 | 19 |
| 제 202 호 | (성북구공고) : 공인신조공고 | 20 |
| 제 54 호 | (서대문구공고) : 공인신조공고 | 21 |
| ◎ | 사 령 | 22 |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1975년 10월 10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989 호

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(이하 '장학금'이라 한다)의 자금이 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제 3 조 (장학생의 자격) ①새마을 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아 새마을지도자(구·출장소 지역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)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

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성원의 30/100이내에 해당하는 자
2. 특기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
②제 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

제 4 조 (추천) 구청장(출장소장)은 교육구청장과 협의하여 제 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신청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.

제 5 조 (선발) ①시장이 구청장(출장소장)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 지도자의 활동상황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계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
1. 새마을 훈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2. 새마을 포상을 받은 지도자의

| | |
|---|---|
| <p>자녀</p> <p>3. 새마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</p> <p>4. 새마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</p> <p>5. 새마을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</p> <p>6. 새마을 유공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</p> <p>7. 새마을 유공으로 구청장(출장소장)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</p> <p>8. 자립마을 지도자의 자녀</p> <p>9. 자조마을 지도자의 자녀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·고등학생을 각각 50%로 안배하고, 중학교는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구(출장소)당 연간 평균 4-10명으로 하되 매년 확대 실시한다.</p> <p>제7조(장학금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장학금의 지급) ①장학금은 분기별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할 일시에 지급할 수</p> | <p>있다.</p> <p>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.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.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<p>②구청장(출장소장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,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</p> |
|---|---|

이바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장학금 확보)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합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, 부족분은 국고보조금,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2 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7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년도의 장학금 지급은 제 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 학기분만을 지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1975년 10월 10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990 호

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(이하 영이라 한다) 제 12 조 제 1 항 단서

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수료) ① 지부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영 제 3 조 규정에 의한 지부 등록에 있어서는 6,000 원
2. 영 제 6 조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중 지부변경 등록에 있어서는 2,000 원

②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 31 조 제 13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구분내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수수료 납부)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종합설계실운영 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1975년 10월 10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522 호

서울특별시종합설계실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종합적인 기술 검토와 신속하고 계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종합설계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운영) ① 종합설계실은 건설국장 지휘 감독하에 두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와 수리부를 둔다.

② 각부에는 기술사(부장급), 기사 및 숙련사를 두며 기술사는 지방계약직원 규정 제 4 조 별표 2의 계약직원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준한 1급기사, 기사는 동 2급기사 숙련사는 동 3급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.

제 3 조 (기능) 종합설계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기존자료의 정비
- ② 기술협력
- ③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
- ④ 설계 및 시공 등의 감리
- ⑤ 준공검사 검열

제 4 조 (직원) ① 종합설계실에 근무할 직원은 계약 직원으로 중당하고 그 신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

시 계약 직원 규칙에 준한다.

②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특수설계의 필요가 있을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.

제 5 조 (사무분장) ① 구조부에서는 축랑, 도로, 구조,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을 전담한다.

② 수리부에서는 위생, 난방, 일반기계, 전기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.

제 6 조 (감독)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국장의 명을 받아 종합설계실의 일일 작업보고를 받고 그 운영관리 지도한다.

제 7 조 (보수) ① 직원의 보수는 지방계약직원규정 제 9 조에 준하며 별표 2와 같다.

② 지방계약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| <별표1> | | | | |
|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지 원 의 정 원 | | | | |
| 구 분 | 부 서 | | 계 | 비 고 |
| | 구조부 | 수리부 | | |
| 기술사 | 1 | 1 | 2 | |
| 기사 | 4 | 2 | 6 | |
| 숙련사 | 4 | 2 | 6 | |
| 계 | 9 | 5 | 14 | |

| <별표2>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지 원 의 보 수 한 계 표 | |
| 구 분 | 월 지 급 액 |
| 1급 연구원, 기사 및 의사 | 200,000 원 이하 |
| 2급 연구원, 기사 및 의사 | 160,000 원 이하 |
| 3급 연구원 및 기사 | 120,000 원 이하 |

| | |
|---|---|
|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시행 규칙을 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순 인 1975년 10월 10일 | 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23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|
|---|---|

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장학금의 신청)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(제 1 호서식)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(출장소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 통
- 2. 성적 또는 특기증명서 1 통
(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)
- 3. 학교장의 추천서(제 2 호 서식) 1 통
- 4.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 및 공적 증명서 1 통
- 5. 서약서(제 3 호 서식) 1 통
- 6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1 통

제 3 조 (추천)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(출장소장)은 교육구청장과 협의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구청장(출장소장)의 추천서(제 4 호서식)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

추천한다.

제 4 조 (선발)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도자의 활동상황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구청장(출장소장)과 학교장을 거쳐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구청장(출장소장)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(제 5 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 2 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선받은 하지 아니한다.

제 5 조 (장학금의 지급)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의 지급은 구청장(출장소장)이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

부 칙

이규칙은 197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제 1 호 서 식>

장 학 금 신 청 서

1. 보호자 인적사항

- 본 적
- 주 소
- 성 명 (한글) (남·녀)
(한자)
- 생년월일 년 월 일 (세)
- 지도자경력 년 월 일부터 (년)
- 공적개요

2. 장학생 인적사항

- 학 교 명
- 학년 반 (학과)
- 성 명 (한글)
(한자)
- 생년월일 년 월 일 (세)
- 보호자와의 관계
- 성적 (특기) 개요

3. 가족상황

| 성 명 | 본인과의관계 | 연 령 | 직 업 | 비 고 |
|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 |
| | | | | |

4. 보호자 재산상황

| 부 동 산 | 동 산 | 연 수 입 | 기 타 |
|-------|-----|-------|-----|
| 원 | 원 | 원 | 원 |

서울특별시 197 학년도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을 받코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합니다.

- 1. 제적(입학) 학교장의 추천서 2통
- 2. 주민등록 등본 2통
- 3. 서 약 서 2통

197 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장 귀하

신청인(보호자) 성명

(인)

<제3호서식>

서 약 서

1. 본 적

2. 주 소

3. 성 명 (남·여) 생년월일 년 월 일

4. 학교명 학교 학년 반 (학과)

본인은 서울특별시 197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이 된 영예를 경감하고 장학생에 대한 계발금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할 것을 보조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 합니다.

197 년 월 일

장학생 성명 (인)

보조자 성명 (인)

서울특별시장 귀하

<제 5 호서식>

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

본 지

주 소

학교명

학교

학년

반 (학 과)

성 명

(남 · 여) 생년월일

년

월

일

본인은 197 학년도 서울특별시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
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197 년 월 일

신청인

주 소

성 명

☺

보호자

주 소

성 명

☺

신청인 과의

관 계

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

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인

1975.10.10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524 호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운영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 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0 조 (공사신청및승인) ①급수공사의 신청은 신청자가 별지제 10 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시장은 전항의신청을 받은때에는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시장은 급수공사 승인통지서와 함께 다음각호에 기재하는 금액에 관한 납입통지서와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발부한다.

- 1. 가 입 금
- 2. 설계 수수료
- 3. 준공검사 수수료
- 4. 관급작제비

④전항 각호의 금액과 공사비는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액표에 의하여 산출한다.

⑤제 3 항각호의 금액과 공사비는 제 3 항의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21 조를 제 22 조로 하고, 제 22 조를 제 21 조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1 조 (공사의시행) ①시장은 급수공사비가 납부된날로부터 3일이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공사기간은 급수공사 1건당 3일간을 원칙으로한다. 다만, 구경 50mm 이상 또는 연장 20m 이상일 경우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도급자는 공사완료즉시 통수하고 1일이내에 급수공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급수공사의 입찰공고 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.

별표제 1 호 시공영업허가 기준표중 공기구 해빙기의 수량 2 "을 1 "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규칙은 197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받은 급수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5년 10월 10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준 인

◎ 서울특별시 훈령제 433 호

서울특별시세무공무원인사관리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세무분야 (이하 "세무부서"라 한다) 근무 공무원의 자격, 지정, 보임의 목적, 교육훈련 기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·조례, 규칙으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세무공무원"이라 함은 시세

의 부과장수분야에 종사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3급을불 이하 공무원으로서 이 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.

2. "세무부서"라 함은 본청 세정과, 세무조사과, 구 세무 1과, 세무 2과 및 구 출장소 세무과를 말한다.

제 4 조 (세무공무원의 지정)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내무국장이 제무국장과의 협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.

1. 과거 10년 이내에 세무부서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.

2. 상업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의 상경, 법학과에 2년 이상 수료자 및 졸업자.

3. 기타 세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.

1. 세무수행상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.

2. 업무수행에 있어 사회물의 및

민원을 야기한 자.

제 5 조 (보임의 특례)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

세무부서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제 6 조 (교육)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.

- 1. 전문교육: 년 1 회 실시하되 교육기간은 2 주 또는 9 박 10 일
- 2. 수시교육: 년 2 회 이상

제 7 조 (지정의 해제) ① 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기구의 조정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
- 2. 당해 공무원의 승임 또는 강임의 경우
- 3.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
- 4. 제 4 조 제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.
- 5.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 중 전문교육의 성적이 만점의 6 할 미만인 자.

6. 근무성적 또는 실적이 불량한 자.

7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른 부서로 우선하여 전보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지정해제 절차는 제 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8 조 (실적평가) ①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구별 및 개인별 실적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시세과징기판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, 나아가서 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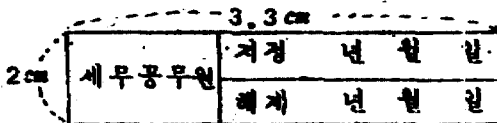
제 9 조 (인사기록카드의 정리) 내무국장은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 비교란에 발표의 기록표시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

날로 부어 시판한다.
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, 이 규정 시행후 10일 이내에 재무국장으로부터 그명단을 내무국장에게 통보한다.



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5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)지적 변경고시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건설부고시제 164호(75.9.27)로 시설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조, 건설부고시제 123호(73.4.4)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13조에 의하여 지적 변경고시함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
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5.10.6.

서울특별시장

지적승인조서 및 도면: 별첨 조서 및 도면과 같음.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함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8호

도시계획시설(유수지)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6호(74.1.5)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5. 10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결정 및 지적조서

| 구분 | 시설명 | 위치 | 면적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신설 | 암사유수지 | 성동구 천호동 358 부근 | 10,484 | |
| | 한남유수지 | 용산구 한남동 512의 7 부근 | 7,270 | |

별첨 도면포시와 같음(도면생략)
※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

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.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59 호

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소
위치 변경 고지

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소의 위치
를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소 설치
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
같이 변경 고시한다.

1975. 10. 7

서울특별시장

1. 위 치

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사동
246 구획의 1호

신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
1가 31

본청사 별관 3층 : 소장실

" " 5층 : 관리과

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

1가 60 - 1

구국회의사당 경비실 : 공사

1, 2과

2. 이전일 : 75. 10. 4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 제 232 호

환지계획업무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김포, 신림, 신림수가
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
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
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
제 47 조 제 55 조 제 33 조 및 행정권
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
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공
람에 공합니다.

2.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
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및
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
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
게 보입니다.

3.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
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
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
공고로 갈음한다.

75. 10. 8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- 1. 사 업 명 : 김포, 신림, 신림구
가 토지구획정리 사업
- 2. 변경지역 : 서울시 관악구 부
천동, 신림동, 영등포구, 목동, 일
부 지역
- 3. 필 지 수 : 16 필
- 4. 변경조서 및 도면 : 조서별첨,
도면생략(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도시정비과 및 관할구청 시민부
사실에 각각 비치).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33 호

주택개발사업
건축계획 공람공고

- 1. 건설부 고시 제 145 호 (74
5.13) 제 18 호 (75.2.8)
및 제 136 호 (75.8.25) 로
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당
사의 '75 시행주택개발 계획
발 지구인 육인, 면목 1, 2.

구역 1, 3, 아현제 2 일부
및 대방, 한남제 1 구역 등 8 개
구역에 대해 주택개발 촉진
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 4
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
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
계획을 건축법시행령 제 152
조 제 3 항에 의거 공고일로
부터 10 일간 사업구역내 토
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
관계인 에게 공람 합니다.

- 2. 상기 건축 계획서는 당시
주택국 개발 2 과에 비치되어
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개
별 서류 송달은 생략 합니다.

1975. 10. 1.

서울특별시장

○성 북구공고제 202 호

공인 신조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조하였기 동조례 제 9조에 의하여 이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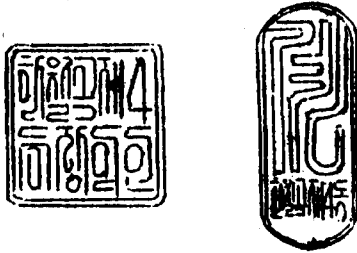
공고함.

1975.10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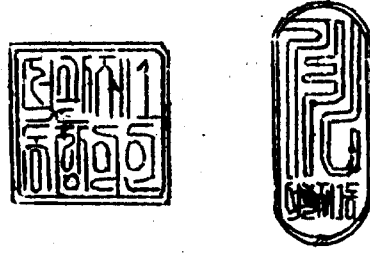
성 북 구 청 장

- 1. 신조사용일자 : 75.10.1
- 2. 공인의 인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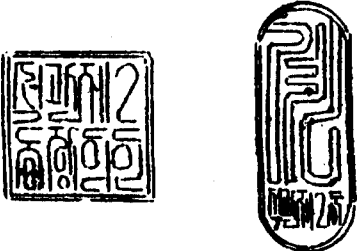
하 월 곡 제 4 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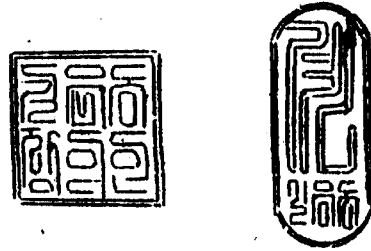
석 관 계 1 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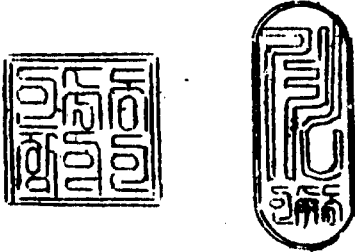
석 관 계 2 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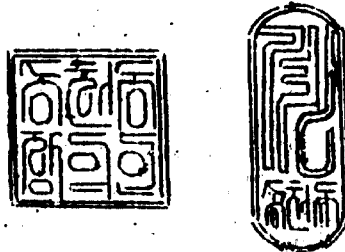
진 음 동



인 수 동



송 천 동



인 의 형 상 : 정 4 각 형 한글 전 서 체

○ 서대문구 공고제 54 호

공인신조공고

서울특별시 동인규칙 제3조에 의
거 당구 산하 동장인 및 계인울 신

조 75.10.1 09:00 부터 사공제
되었기 공고함.

1975. 9.28

서대문구청장

<공인인명>

현 제 동

동장인



계인



홍 제 제 4 동

동장인



계인



원 회 제 3 동

동장인



계인



사 령

○ 1975. 10. 8.

강 남 구 지방행정 서기보 성 현 순
노량진수원지사무소근무를 명함.

○ 1975. 10. 10.

용산구보건소 지방수원 원보 하 수 일
지방축산기원보에 임함.

1 호봉을 급함.

영등포구근무를 명함.

축산불위생 검사소 지방수원 원보시보 강 철 성
지방축산기원보시보에 임함.

1 호봉을 급함.

동대문구근무를 명함.

도시가스과 지방포육 기사보시보 노 경 찬
지방포육기사보에 임함.

1 호봉을 급함.

도시가스과근무를 명함.

시 설 과 지방포육 기사보 김 성 규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농 정 과 지방수원 원보시보 정 진 영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○ 1975. 10. 11.

위생연구소 지방행정 사보 홍 란 기
부직을 명함.

천호출장소근무를 명함.

시 민 과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조 수 호
부직을 명함.

단속과근무를 명함.

○ 1975. 10. 13

중앙선관위 행정사무관 김 주 역
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.

14 호봉을 급함.

강남구근무를 명함.

기 건 과 지방기계 정 이 시 환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연구관 김 효 상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서울특별시